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
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2023. 1. .

국 토 교 통 부
(녹색도시과)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심사 절차 완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미반영시설을 추가하고,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요청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추가

- 1) 묘지공원 및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보안시설(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)(안 별표2 제1호라목 및 제3호아목)
- 2)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, 국가 지원지방도, 광역도로(안 별표2 제2호나목)
- 3) 기존 국방·군사시설 중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(미리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경우에 한함) (안 별표2 제4호라목)
- 4) 교정시설 내 수용자시설(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함)(안 별표2 제4호자목)

나.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요청 기한 명시(안 별표 2 제6호)

국토교통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(보완 기간은 제외)에 국토교통부에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묘지공원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2 제2호나목 중 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”를 “고속국도와 일반국도,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, 국가지원지방도, 광역도로”로 한다.

별표 2 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

별표 2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별표2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1)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

2)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

3)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

자. 교정시설 내 설치하는 수용자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된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담당부서)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개정 전후 비교>

현 행	개 정 안
1. (생 략) 가. ~ 다. (생 략) <u>< 신 설 ></u> 라. 그 외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,000㎡ 이하이 고, 건축연면적이 10,000㎡ 이하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 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 서)과 협의한 시설 (단, 이 훈령에 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) 2. (생 략) 가. (생 략) 나. 도로시설 중 휴게시설 이외의 시설 (단,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수 립, 승인하거나 설치하는 <u>도로법</u> <u>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</u> <u>도가 아닌 도로시설</u>은 규모·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하	1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<u>묘지공원 내 설치하는 보안시설(법</u> <u>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</u> <u>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</u> <u>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</u> <u>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</u> <u>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</u> <u>한한다)</u> 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<u>고속국</u> <u>도와 일반국도, 대도시권 교통혼잡</u> <u>도로, 국가지원지방도, 광역도로</u> -- ----- -----

여야 한다.) 다. ~ 아. (생략) 3. (생략) 가. ~ 사. (생략) <u>< 신설 ></u> 4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 라. 국방·군사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 및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마. ~ 아. (생략) <u>< 신설 ></u> 5. (생략) <u>< 신설 ></u>	-----. 다. ~ 아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아. <u>장사시설 내 설치하는 봉안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 위치·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)</u> 4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국방·군사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)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 2) 주요 군사시설의 방호 설계기준상 3급 이상의 보안시설 3) 영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마. ~ 아. (현행과 같음) 자. <u>교정시설 내 설치하는 수용자시설(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면적 안에서의 신축 및 증축에 한한다)</u> 5. (현행과 같음) 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시설
---	--

	<u>중 국토교통부장관(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)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도지사는 설치주체(사업시행자)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</u>
--	--